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321만4천원”을 “337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9만2천원”을 “324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97만4천원”을 “312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2만8천원”을 “107만9천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제1호 중 “289만9천원”을 “304만4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5천원”을 “210만5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22만1천원”을 “128만2천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289만9천원”을 “304만4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0만5천원”을 “210만5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22만1천원”을 “128만2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46만1천원”을 “50만1천원”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4,058	5급	2,116
1급 2항	3,827	6급 1항	1,931
1급 3항	3,663	6급 2항	1,778
2급	3,258	6급 3항	1,194
3급	3,045	7급	708
4급	2,555		

2.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만8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138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479
3) 부모 또는 조부모	2,101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853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153
3) 부모 또는 조부모	1,824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680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982
3) 부모 또는 조부모	645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375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상이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250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월 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570
2. 을지무공훈장	565
3. 충무무공훈장	560
4. 화랑무공훈장	555
5. 인헌무공훈장	550

[별표 5의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779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513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657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
 -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778	3급	1,267
1급 2항	1,778	4급	777
1급 3항	1,778	5급	338
2급	1,480	6급 1항	153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360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701
3) 부모 또는 조부모	323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 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75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75
3) 부모 또는 조부모	46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를 말한다)	289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1급 1항: 월 321만4천원

2. 1급 2항: 월 309만2천원

3. 1급 3항: 월 297만4천원

4. 2급: 월 102만8천원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
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
는 사람: 289만9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
는 사람: 200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
는 사람: 122만1천원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
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
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
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
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

1. ----- 337만5천원

2. ----- 324만7천원

3. ----- 312만3천원

4. ----- 107만9천원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304만4천원

2. -----
----- 210만5천원

3. -----
----- 128만2천원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89만9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00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22만1천원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
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46만1천
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